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4 - 4

제출년월일 : 2024.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 ~ 제22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 추진 필요성

- 기존 위탁 운영 및 신규 설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시설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 보장(최초운영권 5년, 서울시 지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및 규모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비고
			면적(㎡)	정원(명)	
1	성산누리	월드컵로 215, 1층 (성산동, 성산종합사회복지관)	343	85	
2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숭문길 98, 관리동 1층 (염리동,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367	65	
3	마포한강 아이파크	희우정로 77, 102동 1층 (망원동, 마포한강아이파크)	111	21	
4	오즈	마포대로 195, 4단지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18	53	
5	토리	마포대로 195, 3단지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9	45	
6	숲속	마포대로 195, 1단지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8	62	
7	해가람	마포대로26길 19 (아현동)	429	68	
8	삼성푸른숲	마포대로11길 50, 409동 1층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	218	36	
9	도화	새창로4다길 18 (도화동)	295	65	
10	망원	동교로 47-9 (망원동)	327	57	
11	합정	양화진길 43 (합정동)	318	45	
12	용강	토정로37가길 34 (용강동)	429	81	
13	(가칭)공덕동 크로시티행복주택	백범로31길 19, 1층 (공덕동, 공덕 크로시티)	270	45	신규확충 (신 설)
14	온누리	숭문길 106, 관리동 1층 (염리동, 상록아파트)	205	37	신규확충 (전 환)

○ 위치도

1	성산누리어린이집	2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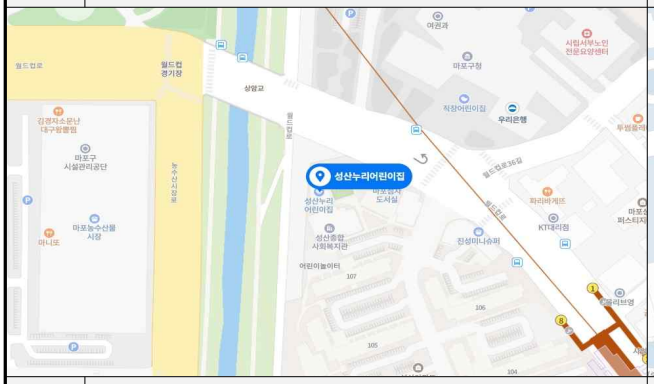			
3	마포한강아이파크어린이집	4	오즈어린이집
5	토리어린이집	6	숲속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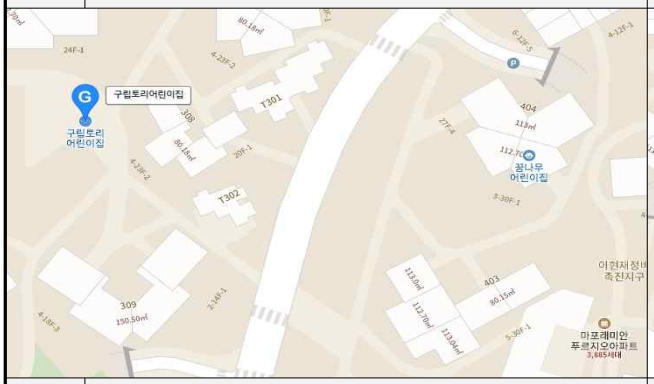			
7	해가람어린이집	8	삼성푸른숲어린이집

9	도화어린이집	10	망원어린이집
11	합정어린이집	12	용강어린이집
13	(가칭)공덕동크로시티행복주택어린이집	14	온누리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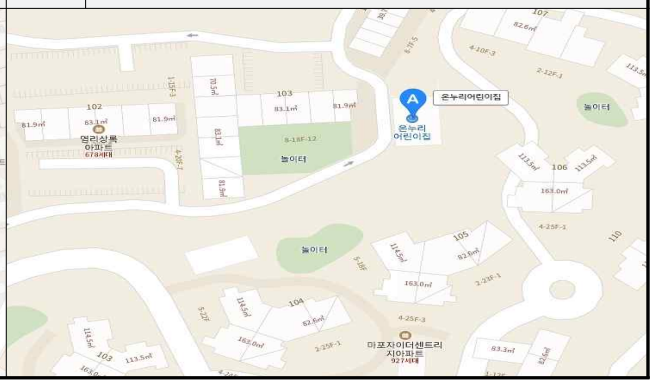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연번	어린이집명	위탁기간	비고
1	성산누리	2024. 07. 27. ~ 2029. 07. 26.	
2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2024. 09. 26. ~ 2029. 09. 25.	
3	마포한강 아이파크	2024. 09. 26. ~ 2029. 09. 25.	
4	오즈	2024. 10. 01. ~ 2029. 09. 30.	
5	토리	2024. 10. 01. ~ 2029. 09. 30.	
6	숲속	2024. 10. 01. ~ 2029. 09. 30.	
7	해가람	2024. 10. 01. ~ 2029. 09. 30.	
8	삼성푸른숲	2024. 10. 01. ~ 2029. 09. 30.	
9	도화	2025. 01. 01. ~ 2029. 12. 31.	
10	망원	2025. 01. 01. ~ 2029. 12. 31.	
11	합정	2025. 01. 01. ~ 2029. 12. 31.	
12	용강	2025. 01. 01. ~ 2029. 12. 31.	
13	(가칭)공덕동 크로시티행복주택	개원일로부터 5년	
14	온누리	전환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계	국비	시비	구비
1	성산누리	449,926	94,235	244,604	111,087
2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243,740	13,097	163,395	67,248
3	마포한강 아이파크	141,876	4,263	98,367	39,246
4	오즈	371,024	92,065	184,387	94,572
5	토리	253,952	8,987	171,746	73,219
6	숲속	334,496	82,587	169,442	82,467
7	해가람	409,390	97,067	212,111	100,212
8	삼성푸른숲	181,813	4,211	129,056	48,546
9	도화	446,197	100,031	235,762	110,404
10	망원	399,175	101,056	198,175	99,944
11	합정	253,803	62,655	126,891	64,257
12	용강	319,915	72,190	171,091	76,634
13	(가칭)공덕동 크로시티행복주택	160,000	55,000	81,000	24,000
14	온누리	200,000	42,500	133,500	24,000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신규 설치 및 기존 위탁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 ~ 제22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신규 확충 어린이집에 한함)

○ 추진일정

- 2024. 3.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고
- 2024. 4.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4. 4. ~ 5. :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024. 4. ~ 6. :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매 등 개원 준비
- 2024. 6. : 구립어린이집 개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1조(수탁자 모집)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2조(위탁기간)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축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